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있어서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고찰¹⁾

김광이

I. 들어가며

미국 장애인법(American Disability Act, ADA) 1990년 제정, 영국 장애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DDA) 1992년 제정, 독일의 사회법에 의한 보장 외에 장애인차별금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장애인평등에관한법 2002년 제정 등 일부 사회보장에 관한 선진적 국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이미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에는 장애인도 국민으로서 실질적으로 평등할 권리를 자기결정에 의해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정신이 들어있다.

이제 우리는 21세기에 들어서서 장애인의 삶에 대하여 시혜가 아닌 인권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으로 대사회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노무현 정부가 5대 차별영역(학벌,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사회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국가차별시정위원회’ 설치를 정부 내에서 먼저 형성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안 마련을 위한 추진단(가칭)’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시대적 추세이며 바람직한 현상이며 장애를 가진 여성으로서 매우 기쁜 일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관철되어야 한다. 장애의 정의와 어떤 행위범주를 차별로 볼 것인가에 대한 규정은 사회에 도사리고 있는 각양의 차별들을 광범하게 금지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또한 효과적이고 강력한 구제수단의 마련과 차별행위에 대한 판단과 이의 제재를 담당할 구제기구를 어떤 형태로 누가 담당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차별의 실질적 권리구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된다. 우리가 원하는 성공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한 차별의 금지 연구에 대한 사례와 기준이 될 것이다.

II.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의 과정

1.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장추련) 결성의 의의

기존의 우리의 장애인관련법들은 권리보장이 복지 차원에서 제정되어서 법의 현실 적용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사정 혹은 “보다 더 큰”논리에 의해 좌우되어왔다.

어느 집단이든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희생과 침묵을 암묵적으로 오랜시간 강요당하게 되면 자신의 인권침해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게 된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착취당하지 않으면서 노력하는 만큼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느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사회질서가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1) 이 글은 {김광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의의 및 성인지적관점에서의 고찰’, “제3기 여성장애인인권아카데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2003.}을 수정한 글입니다.

장애인 인권운동에 있어 중요한 것은 “자기결정권”의 실현이다. 장애의 다양한 유형과 장애의 정도에 따라 그 불편과 필요는 각기 다르다. 이러한 요구의 해결은 자신에 의해 주장되고 조건이 조성되어야 자기의 삶을 능동적으로 가꾸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여성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여성 관련 정책들이 권력이 잡은 남성들에 의해 만들어짐으로써 오히려 여성의 감수성과 필요와는 다른 방향으로 집행이 이루어진 폐단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이것을 당사자주의의 실천이다.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매우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장애학 강의를 하고 있는 J. Charlton의 저서의 제목인 ‘Nothing About Us Without Us(우리가 없다면, 우리에게 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이다. 이 말은 여성운동에 있어서도 아주 적절하다.

무엇보다도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장추련)를 당사자인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의의일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필자가 기억하는 한 최초로 장애계가 폭넓게 결집한 사건으로 장애인운동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제정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을 통하여 장애계의 합의와 단결의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연습의 장이 될 것이다. 향후 단체간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사안에 따라 한 목소리로 결집할 수 있는 원천이 될 것이다.

또하나의 의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안과 운동 과정에서 최대한 당사자의 감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립적으로 자조활동을 하던 소그룹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기존의 큰 힘으로 작용하던 결집단체들이 뒤로 물러나 실무역할을 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결성과정에서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 및 개별 단체들을 제3그룹으로 모아 실질적 의결단위인 상임집행위에 동등한 비율로 참여되도록 구성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공고하게 하기 위하여 시민단체들의 지원 및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해야한다. 범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장애인차별이 현재의 장애인뿐만 아니라 미래의 장애 가능성에 대한 차별금지까지 담보되어야 한다. 법 제정 이후 공권에 의한 차별금지 뿐만 아니라 사인에 의한 차별금지의 홍보 역할을 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III. 장애의 정의 및 차별의 개념

1. 장애란 무엇인가

국어사전에는 “장애”를 “① 무슨 일을 하는데 거치적 거리어 방해가 되는 일, 또는 그것 ② 신체상의 고장”이라고 하고 있다.²⁾ 장애인이 불쾌하게 대우받아 온 사회적 편견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우리의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①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을 다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2) 새동아 국어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1984. 엡센스 국어사전(서울:민중서림, 1984)에는 “막아서 거치적 거림”이라고 되어있다.

이 법의 의해 시행령에는 장애인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의 10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의를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에 대한 개념의 변화와 비교해봄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시각을 정립해볼 수 있다.

WHO는 1981년에 장애 정의를 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라 하여 신체적 손상(Impairment), 능력의 장애(Disability), 사회적 불리(Handicap)라 하고, 이에 따라 장애를 800여 개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개인의 장애를 원인으로 한 의학적 관점에서만 정의된 것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장애인의 삶은 사회적 측면에서 제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대두된 개념이 1999년에 정의된 ICIDH-2로서 의학적 관점에서의 분류를 보완하여 장애를 신체적 손상(Impairment)·활동(Activity)·참여(Participation)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신체적 손상 정도가 심하여도 활동 가능성과 사회참여가 활발하다면 장애의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없게 된다. ICIDH-2에서 제시된 손상·활동·참여의 세 축의 적용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이어서 장애인의 경계는 점점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가장 최근에 WHO에서 제기한 장애개념은 ICIDH-2를 발전시킨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이다. ICF에 의하면, 장애는 신체적 기능(Body Functions), 신체적 구조(Body Structures), 활동과 참여(Activities and Participation), 환경적 요소(Environmental Factors)에 의해 정의된다. 장애를 둘러싼 수많은 물리적, 사회적 문제를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어 이 4영역에 각각 수백의 장애유형이 포함된다. 그리고 국제질병분류체계인 ICD-10과 상황적 맥락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ICF는 장애에 대한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상호관련성을 규명하고 통합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ICF는 인간의 기능을 제한하는 요소들의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모든 인간에게 적용가능한 보편적 모델이라 할 수 있다.³⁾

ICF에 의하면 개인적 조건이 장애가 아니라 개인적 불리를 심화시키는 환경요소가 장애가 된다. 따라서 개인을 구별하여 격리하거나 특별 대우를 하는 것은 차별이 될 뿐만 아니라 장애를 영구화시키게 되므로 장애 요인인 환경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의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정의는 현재 국제적 합의수준과 현격히 후진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미개한 정의는 사회의식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 전반에서 더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2. 무엇을 차별로 볼 것인가

1) 차별과 평등

우선 차별의 개념을 말하기 전에 우리에게 친숙한 평등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차별금지 는 평등을 전제로 한다. 어떤 상태를 평등하다고 할 것인가는 장애를 가지게 된 순간부터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획일적 속도로 살아갈 수 없는 장애인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 김용득, "장애개념의 변화와 사회복지실천 현장 합의", 제10차 RI Korea 재발대회 자료집, 서울: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02. 참조

UN의 장애인의 기회균등화에 관한 표준규칙(1993)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등한 참여”를 전제로 하여 접근권·교육·고용·소득유지와 사회보장·가정생활과 인적 통합·문화·오락과 스포츠·종교에 있어서의 평등을 규정하고, 이어서 이행조치와 감시체계에 대해 정하고 있다. 특히 접근성에 대하여 “국가는 모든 사회영역에서의 기회균등화를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어떤 유형의 장애인을 위해서도 국가는 물리적 환경을 접근하기 쉽도록 마련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정보와 통신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5조)”고 규정하고 있다. 인적통합에 대하여 “국가는 장애인들이 가정생활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 국가는 장애인들의 인적통합에의 권리를 증진하여야 하며, 남녀관계·결혼·친자관계에 있어서 법적으로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제9조)”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칙의 목적은 동등한 참여이다. 동등한 참여를 위하여 가장 우선 갖추어져야 할 내용으로 물리적 접근권과 정보 접근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문화 영역에서의 평등과 인적통합을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준규칙은 표면적으로 기회와 조건의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특히 장애인에게 있어 기회와 조건의 평등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같은 결과가 발생하기 어렵다.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개인이 겪는 과정에서는 사회적 환경요소들 및 개인적 환경요소들이 개인의 장애의 유형 및 정도와 밀접한 상관성을 갖게 될 것이다. 같은 정도의 노력의 결과에 있어 평등이 보장되어야 비로소 차별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까지 이루어지면 진정한 평등이 이루어지고 차별없는 세상이 되는 것인지, 장애인에게 있어 결과의 평등의 가치를 짚어보아야 한다. 사회보장이 잘된 나라에서 오히려 사회보장에 의지해 사람들이 근로의욕을 갖지 않는다고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이 부족하고 노동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회보장 수급에 의해 비장애인과 같은 정도의 생활이 보장되었을 때 사회적 장벽을 이유로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진정한 자기개발과 통합사회 실현을 통한 자아실현에의 노력은 포기되어 질 수 있다. 평등권 침해가 차별행위가 되지만⁴⁾ 실질적 평등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가장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장애인의 경험적 삶을 근거로 다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진정하게 차별이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개인의 욕구 발생과 이의 실현을 위해 개인의 실천의지가 제한당하지 않으며, 자기결정에 의해 그 의지가 발휘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2) 차별의 개념

또한 개인의 능력과 차이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실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면 모두가 같은 속성을 지닌 집단으로 간주됨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차별로서 짚어보자.

차별이란 한 개인이나 집단을 다르게 대우함으로써 심리적·사회적 불이익을 주는 것을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①항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평등권침해의 차별 행위를 당한 경우

말한다. 차별은 강자가 약자에게, 다수가 소수에게, 주류가 비주류에게 행해진다. 이는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집단이 형성한 권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의 이해와 관점에 의해 정해진 개인들간의 다름을 서열화하고 위계화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위계화 된 질서에서 소외되고 배제되고 존재가 인정받지 못하는 집단은 열등한 존재로 보호와 통제의 대상이 되고, 이러한 통제의 동기를 은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편견과 고정관념이다. 편견과 고정관념의 대상이 되는 소수자들은 태생적으로 또는 편견 등으로 인한 후천적으로 발생한 속성을 이유로 구별, 배제,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사회적 소수자 개인을 그가 속한 집단과 동일시하여 개인을 집단이 가진 속성을 가졌다고 단정함으로써 개인이 불리하게 대우받게 된다.⁵⁾ 장애의 개별적 특성에 의한 차이와 다양성이 배제되는 차별도 이로서 설명가능해진다.

유엔을 비롯한 서구사회에서는 차별을 직접차별, 간접차별, 폭력(harassment)으로 보았다. 또한 과거 차별의 결과로 형성된 현재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과거의 차별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까지 취하는 한시적 적극적 조치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⁶⁾

직접차별이란 합리적 이유없이 성, 연령, 신체조건, 성적 지향 등 개인의 태생적 혹은 후천적 속성을 이유로 그 개인에 대해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에는 차별의 직접적 의도성을 차별 판단의 주요한 기준으로 삼았으나 그 의도성과 상관없이 그 속성을 이유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가 있었다면 차별로 판단하고 있다.⁷⁾

간접차별이란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러한 중립적 기준이 특정 소수자나 소수 집단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나 행위에 의해 불평등 효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장애인에게 있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평등개념과 맥락을 같이하여 합리적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이로 인해 생이 전반에 걸쳐 불평등이 조장되므로 중요한 차별행위가 된다.⁸⁾

폭력이란 성폭력, 가정 폭력 등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집요하고 반복적인 괴롭힘을 말한다. 즉 위법한 의미로서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개인으로 하여금 그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감, 모욕감, 혐오감, 위협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를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공격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를 말한다.⁹⁾

IV. 여성장애인의 권리구제에 대한 허구

- 장애여성 인 지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관련법 -

앞서 설명한 최근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인 ICF에 의하여 여성이 겪는 중첩적인 장애는 설명하기 보다 쉬워진다. 신체기능 및 구조와 활동 사이에는 환경적 요소인 사회의 인식, 건축물의 장애요소 등이 작용한다.¹⁰⁾ 장애인에 대한 무능력과 못난 외모로 대치되는 편견과

5) 차별연구모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판단을 위한 지침, 2002, p2. ; 조순경, “차이의 신화와 차별의 현실”, 제주인권학술회의, 한국인권의 현황과 과제, 기초발제 논문(한국인권재단, 2002)

6) 위의 책, p5-6.

7) 위의 책, p6.

8) 위의 책, p7.

9) 위의 책, p11.

남성과 비장애인 중심으로 구성된 물리적 환경은 여성의 개인적 장애를 더욱 심각하게 느끼게 한다.

또한 활동과 참여 사이에는 개인적 요소인 성, 인종, 연령, 습관 등이 영향을 미친다.¹¹⁾ 지금까지 우리는 여성이며 장애인이라는 두 가지 속성만으로 여성장애인을 설명하여왔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여성의 연령에 따라 차별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개인이 사회적으로 어떤 관계속에 자신의 대처양식을 개발해 왔느냐에 따라 여성의 개별적 장애는 달리 나타난다. 따라서 같은 여성, 같은 장애인, 같은 여성장애인 사이에서도 무수한 차이가 존재하며 이 차이가 사회적 주류의 편입 정도에 따라 위계화 되어 왔다. 여기서 여성장애인은 가장 낮은 위치에서 차별을 받아왔다.

그러나 장애여성과 관련된 정책과 법은 성과 장애 등의 환경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보편적 틀로 만들어졌다. 장애여성은 관련 제도 결정의 축에서 주변적 존재로 있었기 때문에 남성과는 물론 같은 동성과 다른 삶의 경험들이 수용되지 못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장애여성에 대한 인지적 관점을 주도적으로 담아내기 위하여는 장애여성과 관련된 정책 및 법 속에서 이를 장애여성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반영시켜보아야 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문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1998년부터 3년간의 노력으로 2001년 제정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인권침해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면 차별상황에 대한 진정이 있으면 우선 조정을 하도록 되어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문제인데, 구체조치로서 권고에 그치고 권고조치에 불응했을 때 제재조치가 미흡하다. 다시 개인의 소송이나 헌법소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제소를 하여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법기관의 인권의식은 기대할만하지 못하다. 실제로 검찰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국가기관에 대해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서 국가기관에 대한 고용의무는 임의조항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기각한 바가 있다.

또한 법무부 인권침해사건 처리규정에 보면 제7조(조치유예)에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침해자의 성격, 연령, 환경, 침해의 경중 및 정상, 침해 후의 정황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치 유예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 공적영역에 의한 침해가 보다 더 큰 논리에 의해 오히려 침해자가 보호되고, 사적부분에 있어서도 장애인에 관하여 인권침해가 아니라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차별가해자의 행위가 이해되고 너그럽게 보아주는 것을 경험하여 왔다.

2. 장애인관련법의 문제점¹²⁾

1) 장애인복지법

10) <http://cafe.daum.net/KDDA>.

11) <http://cafe.daum.net/KDDA2002>.

12) 여성장애인차별에 관한 사례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3. 참조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권·재활·복지에 관한 일반법이자 기본법에 해당한다. 제 8조¹³⁾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제 9조에서는 여성장애인의 권익¹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에 차별금지에 대한 별개의 조항이 있어도 장애인이 겪는 차별에 대해 구체적이지 못하고 별척조항이 없어서 실질적 실효성을 담보해내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여성장애인과 관련하여서,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한 개의 항으로서만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어 선언적 의미를 지닐 뿐이어서, 이 법에 의하여 여성장애인에 관한 정책에 관한 입안과 시행을 유도하고 강제하기 위한 근거가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과 관련하여, 제78조 제1호에는 장애인의 입학지원 및 합격자의 입학거부 등의 불이익한 조치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그 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벌금이 너무 적어 교육차별을 받는 당사자의 교육권을 보장하는데 제구실을 하고 있지 못하다.

2) 특수교육진흥법

이 법은 1977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94년 1월 7일 전면 개정되고 이후 두 차례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 13조¹⁵⁾에서는 교육권에 있어서의 차별의 금지를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 7조¹⁶⁾에서는 합리적 배려의 조치로서 입학전형 및 수학편의의 제공 등을 언급하고 있다.

위의 규정은 대학 입학 시험 등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지원 자체를 거부하거나 합격된 장애인을 장애를 지녔다는 이유로 입학할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해소하고자 제정 당시에 도입된 것이다. 특수교육진흥법의 문제점은 특수교육이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궁극적 의지를 원론으로 밝히고만 있을 뿐, 정작 통합교육에 적절한 교육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13) 제 8조 (차별금지 등)

-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14) 제9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5) 제 13조(차별의 금지 등)

- ①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시험 및 수학 등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의 중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6) 제 7조 (입학전형 및 수학편의의 제공 등)

- ①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의 영역, 장애의 정도 및 능력에 따라 입학 전형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수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수 및 학습활동에 필요한 각종 기기 및 장비 등을 제공하거나 이의 사용 및 인력의 활용 등을 최대한 허용해야 한다.

한편, 여성장애인의 교육정도¹⁷⁾는 초등학교 졸업이하가 장애여성이 68%로 남성장애인 41.4%, 여성의 26.6%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고등학교 졸업 비율도 15.3%로 남성장애인 29.5%, 비장애인 전체 34.7%에 비해 매우 낮다. / 대학 졸업이 4.2%에 불과해 남성장애인 8.5%, 비장애여성 20.6%와 많은 차이가 나고 있어 여성장애인이 고등교육에서 얼마나 소외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대학입학과 관련하여, 특별전형이 실시된 이후 각 대학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 연구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기구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입학울 지원하는 장애학생들을 위한 연구나 합리적인 사전 논의가 부재한 상태에서 대학의 편의적 입장에서 명목 갖추기 식의 전형 태도에 대한 제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 및 교육의 장에서의 합리적 배려 조치와 더불어, 장애인의 교육권을 위한 국가 차원에서 교육정책의 구체성과 장애인교육위원회의 실질적 운용 등의 적극적 태도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차별방지를 위한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특수교육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분리교육으로만 기능함으로써 성장과정에서부터 집단적 편견을 가중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특수교육진흥법은 폐기되거나 단지 특수교육법으로만 작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이 법의 핵심은 의무고용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의 마지막 개정(2000. 1. 12.)이유는 “근로능력과 의욕이 있는 모든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중증장애인의 특별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기타 장애인 고용의무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 제 3조¹⁸⁾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직업 재활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제 14조¹⁹⁾에서는 취업 알선에 대해,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 27조²⁰⁾에서는 고용 장려금의 지급에

17)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18) 제 3조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기타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19) 제 14조 (취업알선 등)

① 노동부 장관은 고용 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알선해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 알선 및 고용 촉진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재할 실시기관 등 관계 전문 기관에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20) 제 27조 ②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는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월단위로 환산한 최저 임금액(이하 “월단위 최저 임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100이하로 하되, 중증장애인 또는 여성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이하로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인원의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많음에도 고용부담금 외에 의무고용을 담보해낼 수 있는 벌칙조항이 없어서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고용차별을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성장애인은 경우 취업의 제한성으로 인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영세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여성장애인의 취업에 관하여 본 법 제3조에 여성장애인의 직업재활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으로 여성장애인을 고용할 시에는 최저기준인 474천 원 보다 많은 592천 원이, 중증·여성장애인의 고용할 시에는 829천 원이 지급²¹⁾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남성장애인보다 취업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5%로 남성장애인 43.5%, 비장애여성 48.3%와 비해 현저한 차이가 있다.²²⁾

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에게 있어 차별의 발단은 주류의 시각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의 문제는 드러남을 통하여 존재를 알려야 한다는 절박함이다. 이 법은 장애인 등이 생활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것(제1조)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보호 대상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제2조 제1호)”라고 하여 장애인만이 아닌 광범위한 이동약자로 정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 편의증진법은 버스 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버스 터미널의 편의시설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다든지, 편의증진법의 소관 부처가 여전히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있다는 점, 그리고 편의시설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을 심의할 수 있는 상설 심의기구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²³⁾ 또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 대하여 유예기간을 두거나, 대부분이 권고적 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장애인 관련법들과 마찬가지로 법적 강제력이 미약하다. 소관부처의 부적절성으로 인해 편의시설 설치가 건설관련법으로서 의무와 책임으로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 이해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지적사항이다. 장애인이동권연대의 “고령자·신체장애인의 공공교통기관을 이용한 이동 원활화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골자로 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이유를 들어 해당 부서 사업이 아니라고 하여 이 건의안의 내용에 대하여 답하지 않았다.²⁴⁾

업주가 장애인근로자에 대하여 월단위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의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100이하로 한다.

21) 노동부 고시 2002-24호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기준, 제4조.

2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3) 이민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2002.11.19.)

24) “고령자·신체장애인의 공공교통기관을 이용한 이동 원활화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골자로 한 건의안에 대해 건설교통부 측은 “보건복지부가 소관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은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여성장애인과 관련하여 상기의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의 32.2%가 스스로 외출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남성장애인의 17.6%에 비해 확연히 많은 수치이다. 또한 집밖의 활동 시 불편정도에 대해 40.0%가 매우 불편하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여성으로서 안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것과 더불어 지체장애인의 경우 남성장애인보다 신체적 “힘”에 있어서 거친 물리적 환경에 의한 영향을 훨씬 많이 받기 때문이며, 사회적으로 불리한 성의 문제가 위험한 사회로의 외출을 금지시키기도 한다.

4) 한국장애인인권헌장

한국 장애인들이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존엄한 인간”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1975년 10월 9일에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인권선언”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998년 12월 9일 한국장애인인권헌장이 선포되었다.

인권헌장은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전문을 정하고 그 아래에 13개항의 선언을 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여성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모성권과 관련하여서만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실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욕구가 무시되고 있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장애인에 비해 더욱 차별된 상황에 놓여있음을 인권헌장에서는 간과하고 있다.

3. 여성관련법 안의 여성장애인

1) 여성발전기본법

이 법은 여성에 관한 법률의 기본원칙을 정한 법으로, 북경세계여성대회 이후 당시 대통령 자문기구인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북경회의의 행동강령을 반영시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일환으로 1995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다.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여성발전기본법 제1조). 이 법은 여성정책의 기본계획과 시책, 여성발전기금과 여성단체의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의 시행으로 여성에 대한 ‘잠정적 우대조치’의 도입근거 마련되었다.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우리부가 주가 되어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기는 곤란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법령을 관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집니다.”라고 답변했다.

여성장애인과 관련하여 제충, 연령을 포함하는 모든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로서의 여성발전기본법에서도 여성장애인은 법의 테두리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있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점이 나타난다.

일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호에 근거한 여성고용촉진장려금액에서 여성가장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은 새로이 고용된 피보험자 1인당 600,000원을 지급²⁵⁾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것은 장애인고용장려금에서 정하는 중증이 아닌 여성장애인에 대해 정한 592천 원보다 많은 금액으로, 경증의 여성장애인보다 비장애여성을 우선 고용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혼율에 있어 전국민 여성의 경우 2.1%임에 비해 여성장애인은 4.9%를 나타내고 있으나 실질적 인구는 비장애인여성 가장실업자가 많을 것이므로 여기서 가장인 여성장애인의 취업현실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통계조사에 여성장애인은 고려되지 않아 왔다.

2)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하 남녀차별금지법)

이 법의 목적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에 따라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 평등의 실현함에 있다. 이 법에는 교육, 고용 외에도 성희롱을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남녀차별금지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성희롱의 피해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모든 대학교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보여주지만, 실제 사례연구결과 면접에 응한 여성장애인 중 교내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거나, 예방교육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실효성이 낮은 규정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보다 잔인하게 은폐되어 왔고²⁶⁾, 특수학교와 장애인시설에서 여성장애인은 성폭력에 방치되어 왔다. 경우에 따라 여성장애인을 무성적 존재로 보는 시각까지 있어 남녀 차별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같은 여성간에 여성장애인이 겪는 성차별은 심각하다.²⁷⁾

한편 남녀차별금지법은 여성발전기본법과 더불어 여성지위향상의 기본법으로 오랫동안 관행화된 남녀차별을 개선하는 척도로서 작용하고 있음에도 여성장애인에 대하여 대체로 장애인에 대한 시각

25) 노동부고시 제2002-46호.

23) “윤락가의 두 장애여성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함께걸음, 2003, 3월호.(서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7) 여성장애인 차별에 관한 사례연구(국가권위원회,2003)에서 여성장애인은 여성장애인이 무성적 존재로 여겨지는 경험을, “수업 시간에 성폭력 관련된 여성학 수업을 들으니깐 느끼는 건데, 여자가 성폭행 당했을 때랑 장애 여성이 성폭행 당했을 때랑...장애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면 ‘어 왜 장애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을까? 누가? 어떻게?... 어떤 남자가 여성을 성폭행한 것도 아니고, 장애 여성을 성폭행 했을까?’ (그런 태도가 보여요?) 되게 느낌이 이상해요 여성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후배이야기인데,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좌변기가 남자화장실에 있는 거예요. 장애인 화장실을 남자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그 친구가 그러더라구요.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 그냥 남자화장실 가서 봐라... 그러는데, 자기는 정말 치욕감을 느꼈대요. 장애인을 성으로 구분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몇몇 여성장애인이 자기가 여성으로써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으로써의 이성교제도 하기 힘들다고까지 생각을 하는 장애인들이 많아요.”라고 말한다.

으로만 보호하고자 한 측면이 있어왔다. 그러나 위의 장애인관련법에 설명된 바와 같이 장애인으로서의 여성은 남성장애인보다 많은 기회에서 제한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성별통계나 성별예산 등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여성장애인과 관련한 법의 제개정 및 정책을 계획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본 법에 의해 차별 사례를 드러냄과 동시에 여성장애인이 겪는 성차별 구제에 보다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

3) 남녀고용평등법

이 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장가정 생활의 양립과 여성의 직업 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을 지원함으로써 남녀 고용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과 대우 및 직장 내 성희롱 방지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²⁸⁾에 의하면 노동부, 고용평등기본계획 주요내용에는 성차별에 대응하여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구체화, 고용평등 상담실 설치, 보육시설의 세액공제 비율 확대, 주택단지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대상 확대 등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계획의 시행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은 취업의 제한으로 인해 여성장애인은 적절한 보장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여성장애인들의 취업과 관련하여, 기업의 여성에게 요구하는 능력으로 직업의식(56.1%), 업무추진력(32.8%), 대인관계능력(28.9%), 자기관리능력(23.1%) 등이라고 한다. 대졸여성이 직장생활에서 강화해야 할 것은 컴퓨터 사용능력, 전공지식 등의 구체적 업무수행 능력보다는 직업 및 직장에 대한 의식, 대인관계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졸여성이 회고하는 대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능력 개발 사항은 대학의 진로 및 직업능력 개발 시스템이 중요한 요소²⁹⁾라고 한다. 이를 통하여 여성장애인이 어려서부터 겪게되는 차별적 상황으로 인해 광범위한 사회관계 속에 놓여 있지 못한 것이 대인관계 등 장애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을 짐작케 한다. 따라서 성장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통합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된다. 또한 국가차원에서 남녀고용평등법으로부터 여성장애인을 소외시키지 않기 위하여는 소외계층에 대한 남녀고용차별 실태에 관심을 갖고 이를 보장할 규정을 명시하여야 하며, 법에 근거하여 남성중심의 장애인 고용정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공적 차원의 적극적인 종합대책을 위한 압력으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개인이 가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전한 가정과 가족제도를 유지,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7년 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조사³⁰⁾에 의하면, 조사대상 장애여성의 49.5%의 많은

28) www.kwdi.re.kr(한국여성개발원)

29) www2.kwdi.re.kr:8090/DATA/2002 report220-2.PDF.

30)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장애인 정책대안 마련 공청회" 자료집, 1999.

수가 무시와 멸시, 언어폭력 등의 정신적 폭력과 구타와 폭행 및 성폭행의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부장적 가족 안에서 보호라는 위선 아래 여성장애인의 자기방어능력의 취약함이 쉽게 폭력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당장의 폭력직전의 위기상황에서조차 여성장애인은 벗어나기 어렵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으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여성장애인이나 노인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폭력에 대하여 막연하게 언급하고 있다. 피해자가 여성장애인, 노인, 아동인 경우 가해자가 또한 보호자로 비추어져 사건처리를 곤란하게 할 경우가 있다. 제5조³¹⁾의 신고받은 경찰의 현장조치에 있어 특별경고 규정을 신설하고, 제9조³²⁾의 가정보호 사건의 처리에 있어 '사건의 성질', '행위자의 성행' 외에 피해자의 성질을 추가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고, 이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의식이 정립되어 있지 못한 때에는 어찌 되었든 가족이 보호해야 한다는 방식의 우선적 처리와 피해여성장애인 개인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아 수사과정에서 다시 차별을 받게 되는 일이 있어 왔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4년 1월 5일에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장애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한 개인에 의해, 혹은 다수자에 의해 반복된다는 데에 심각성이 더하다.³³⁾ 또한 여성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불리한 입장을 이용하여 시설에서 가정에서 마을 등에서 드러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요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상황이 사회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근친강간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이 새로운 문제로 제기되어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가중 처벌과 비친고죄로 하는 내용을

31) 제5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포역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포역행위의 재발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32) 제9조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33) 일례로 강릉에서는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한 여성이 초등학교 6학년부터 7년 동안 같은 동네의 남자 7명으로부터 지속적인 강간을 당했고 여러번에 걸친 부주의한 낙태를 하게 되고 여아를 출산하는 사건이 있었다. (출처 : 서울 : 여성장애인 성폭력 근절과 대책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한국여성장애인연합, 2000.4.)

중심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0년 들어서야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양상과 심각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전에 제정된 법으로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예방과 사후구제에 상당히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법의 제 8조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 형법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에서 정한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서는 범죄입증을 위해서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이라는 상황을 증명해야 한다는 부조리를 담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요구되고 있는 '피해시의 상황에 상관없이 피해자로 인정받고 대우받을 권리'³⁴⁾가 무시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V. 성인지적 관점 담아내기

1. 장애여성에 대한 인지적 관점 결여에 관한 문제제기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장애인에 관한 관련법 속에서 여성장애인은 보호되고 있지 못한 뿐만 아니라 법조항이 미미하고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다. 여성장애인은 여성, 장애인라는 공통점으로 이중적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여성, 남성장애인과 구별·배제·제한된 삶을 살고 있다. 즉 여성장애인은 계층적 위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여성단체가 모여있는 어느 모임에서 여성주의적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여성단체들로부터도 여성장애인은 소외되고 있으며, 인구비례만큼이라도 적극적으로 여성장애인을 고려한 투자를 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주의자"라는 표방에 회의를 갖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말이 사라지기를 바란다. 어떠한 남성이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진정한 사회공동체를 실현에 앞장선다면 브르조아 여성운동가보다 인본주의를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과 마찬가지로 여성장애인도 같은 여성이지만 여성관련법으로써 여성장애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에는 여성장애인이 처한 사회적 여건이 그 법에 못미치고 있다. 비장애여성에게는 이미 많은 차별의 직접 경험 후에 법이 겨우 신발을 꿰차 신고 쫓듯이 만들어졌지만, 그 법률들은 저만치 앞서서 장애인인 여성이 따라오고 있는지조차 안중에 없다.

장애인과 통합을 지향하는 사회에서도 가부장적 관습은 존재한다. 장애관련법이 명목적인 법으로 작용된 것으로 비판되는 점은 있지만 장애남성이 그 법안의 틀 안에서 보다 많은 영역을 점유해왔다.

그리고 여성장애인에 관한 법조항이 장애인복지법과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하나의 조항으로 막연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기준에 의하여 남성장애인보다 조금 많은 장려금지급함으로써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여성장애인 고용촉진에 노력하고자 하지만 비장애여성고용과 비교하여 보다 소수자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고 있는지는 검토되고 있지 않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성인지적 관점 담아내기

34) [성폭력피해자관리현장]은 '98 여성폭력추방주간'에 맞춰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를 위해 선포하였다. 자료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에 참여하는 여성장애인단체는 법 내용과 운동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담아내기 위해 여성상임공동대표 1명과 실무를 담당하게 될 여성그룹의 상임 집행위원 3명 외에 여러 명의 여성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운동과정에서 남성중심적인 관행을 배제하고 다양한 구성원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 의사가 융화되고 운동방법에 있어서도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법안내용에 보다 구체적으로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을 담아내기 위해 여성팀이 만들어져서 법제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여성인 장애인으로서 경험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데에는 세련된 기술과 전략이 필요하다. 법안에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을 담아내는 데에는 여러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장애인으로서 일반적 경험하는 내용은 “장애인”에 대한 각 영역의 차별금지로 포함될 것이기에 “여성장애인”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법안이 전체적으로 어색해질 우려가 있다. 한편 여성이며 장애인으로 중첩되는 차별들을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담으면 명목적인 보장에 그칠 위험이 있어 안되지만, 일일이 구체성을 가지고 규정될 경우에는 이로써 포괄할 수 없는 예측가능하지 않았던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는 해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총칙에 하나의 규정으로 “여성장애인을....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는 것으로는 장애인복지법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발전할 수 없다. 각 영역에서 장애인으로서 포괄된 차별금지에는 그대로 인정하되, 영역에 따라 개별법들간의 모순을 없애기 위해 준용규정-예를 들어 “...관하여 남녀차별 및 금지에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을 둘 수도 있다. 그것이 미흡하거나 부적절하다면 보다 강력한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여성장애인에 관한 별개의 장을 개설해서 여성장애인만의 특유의 경험을 담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참여하기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장애인지적 그리고 성인지적 관점이 스며들기 위해서는 여성이며 장애인인 여러 사람의 경험이 생생하게 드러나야 한다. 즉 사례의 수집과 분류 및 해석을 통하여 의사가 명확한 규정을 생산해내야 한다.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과 다른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여러 설문과 통계들을 통하여 우리는 인식하고 있지만 이 시점에서 되돌아 보아 구체적 상황이 다양하게 제시된 사례와 이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미 장애관련한 차별의 경험들은 다른 단체에 수집된 자료가 있지만 여성장애인에 관한 사례는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를 계기로 주체적으로 여성인 장애인으로서의 경험들을 공유하는 새삼스러운 장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세대별, 장애유형별, 그리고 장애정도에 따라 다양한 논의의 장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성과 장애를 기준으로 보아 장애를 가진 여성은 가장 기층민으로 살아왔으므로 세력을 형성하기가 그만큼 어렵다. 예민한 감수성과 직관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잠재능력을 드러내기에는 편견과 사회의 벽이 너무 높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성인지적 관점을 담아내는 데에는 여성운동의 경험들이 큰 조력이 될 것이다. 페미니스트 작가인 Bell Hooks는 「행복한 페미니즘」에서 개혁적 페미니즘 운동의 주자들인 일부의 백인 여성들은 계급이동을 위한 루트로서 페미니즘을 활용하였고, 근

본적으로 성차별 없는청체적 재편에이 필요하다는 인종적 기반들을 은폐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남성지배로부터 벗어나 보다 많은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성차별 주의는 종식되지 않았음에도 그들의 자유는 극대화되고 노동계급과 빈민여성의 종속을 용납 하거나 사실상 공모하는 이중적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한다.

다음 세대는 우리가 겪은, 그러나 적어도 겪지 않을 수도 있는 물인격적 모델과 아픔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모든 우리의 딸들이 자신의 개성과 재능을 어떠한 썩은 유혹없이 울곧이 드러낼 수 있는 세상이 되하여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은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결과적평등 해석이 빠질 수 있는 오류에 대해 언급한 바와 같이, 중요한 것은 모든 차별금지에 관한 법들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겨우 장애물없이 출입문을 통과하여 비장애 남성과 같이 데스크에 앉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일 뿐이다. 여전히 여성이 치마를 입고 어떤 형태의 리더쉽을 발휘하는지를 꼬나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한, 어느 뇌성마비장애를 가진 여성에 대해 도대체 미덥지못해 동료의식이 생성되지 않는 사회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 진정한 차별 없는 세상이 올거라는 신뢰를 가질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페미니즘은 성차별주의에만 도전한다는 사고를 이 시점에서 성찰해보아야 한다는 여론에 공감한다. 성차별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한 환경을 가진 개인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여성주의적 실천이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운동에 있어 여성주의적 연대와 지지를 기대한다.

깊이 연구하지 못한 줄고를 실게 되어 많이 부끄럽지만, 여성장애인의 현실을 알려내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더욱더 노력할 것을 내 안의 나와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용득, “장애개념의 변화와 사회복지실천 현장 함의”, 제10차 RI Korea 재활대회 자료집, 서울: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02.

Bell Hooks, 행복한 페미니즘, 백년글사랑.2002

새동아 국어사전, 서울: 동아출판사,1984. 엡센스 국어사전(서울:민중서림, 1984)

여성장애인차별에 관한 사례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3.

이민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2002.11.

차별연구모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판단을 위한 지침, 2002,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함께읽음 3월호, 2003.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장애인 정책대안 마련 공청회” 자료집, 1999.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육아의 현황과 대한 모색을 위한 심포지움” 자료집, 2002.11.

<http://cafe.daum.net/KDDA>.(장애인법연구모임카페)

www.kwdi.re.kr(한국여성개발원)